

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규정

제정 2015. 10. 28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동대학교 사회적경제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사회적경제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
2. 사회적경제 인재양성과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사업화
3. 사회적경제 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
4. 사회적경제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운영
5. 사회적경제 컨설팅, 모니터링 및 평가
6.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체계 구축
7. 사회적경제 관련 위탁사업
8. 그 밖에 필요한 사업

제3조(조직)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센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회적기업, 마을기업, 협동조합,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부문별 또는 사업별 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
제4조(센터장) ①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 업무를 총괄한다.

제5조(직원) 학생과 일반인의 교육 및 사회적경제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 센터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6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2.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 및 참여확대) 민간기업 및 단체 등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 및 육성, 교류협력과 거버넌스 구축 및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8조(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) 사회적경제 연구 및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9조(재정) 센터의 재정은 중앙정부 보조금, 지방자치단체 보조금, 본교자체 지원금, 용역수입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.

제10조(회계연도) 센터의 회계연도는 학교 회계연도에 준한다.

제11조(운영세칙) 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.